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489호
- 나. 제안자 : 김달호 의원 외 9명
- 다. 제안일자 : 2019년 3월 25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3월 26일

2. 제안이유

-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나. 또한,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29조는 장애인이 차별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의 경우에도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된 부분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개정(‘16.2.3)한 바 있음.

라.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를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 일부 자구를 현행에 맞춰 보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안 제6조제1호)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맞춰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장애’ 해촉사유의 개선(안 제6조제1호)

- 개정안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변경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¹⁾과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²⁾(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위원의 퇴직이 가능한 요건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한 바 있음³⁾.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역시 ‘장애’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가로 막는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참고자료1].
- 장애의 유무를 일상적인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연계해 판단하는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생략)

3) 인권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는 제8조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인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하였음.

것은 자칫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2180-8058

[참고자료 1]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서울시 조례 중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7년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제안하여 추진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인권친화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의 유도를 통해 시민 인권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조례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위원 위촉 해제 사유’ 조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6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보고서 최종결해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경우에도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된 부분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 ('16.2.3)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위원 위촉 해제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회 해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략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위원 위촉 해제 사유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참고자료 :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